

-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개발·보급
- 5. 생활체육시설에 필요한 비용
- 6.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 7.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 8. 노인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업
- 9.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급기준은 사업의 성격, 지원 대상, 자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의2(중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체육회(이하 “중구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구체육회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중구체육회에 보조하는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위탁) 구청장은 생활체육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기구, 재정적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을 생활체육 관련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가. 구 체육회장
- 나. 구 체육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가.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
- 나. 체육 관련 기관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다. 체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협의회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사업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촉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하게 의결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의 체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의 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4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 -----.
제2조(생활체육의 육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중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화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2조(생활체육의 진흥) ----- ----- “구민”이라 한다) 이 건강과 체력 증진-----.
제3조(재정적 지원) ①구청장은 중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사업추진 및 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생활화운동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개발·보급 5. 생활체육시설에 필요한 비용 6.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8. 노인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중구민 체육생활화운동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및 프로그램개발 · 보급 5. 생활체육시설에 필요한 비용 6.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필요한 경비 7.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육성 · 지원 8.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신 설>	③ 보조금 지급기준은 사업의 성격, 지원 대상, 자부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의2(중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체육회(이하 “중구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구체육회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중구체육회에 보조하는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위탁) ----- ----- 운영을 생활체육 관련단체----- ----- 제5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위탁) 구청장은 생활체육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기구, 재정적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교실의 운영을 생활체육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협회의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체육회장 나. 구 체육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 나. 체육 관련 기관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체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 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사업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위촉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신 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2조(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하게 의결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의 체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의 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신 설>	제14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준용) -----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노인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시니어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중구체육회 및 체육종목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체육단체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를 가능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체육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노인체육 진흥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제8호).
-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3조의2).
- 보조금을 지원받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
-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 제15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64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시 배출자,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을 구청장에게 서면(방문)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생활폐기물용”을 “생활폐기물용 및 음식물쓰레기용”로 한다.

별표 3 중 50L란을 삭제한다

별표 5의 히터란 다음에 태양광 폐패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9	태양광 폐패널	20kg 당	6,000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공급된 50리터 PP마대는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 ----- ---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년	1. ----- 3년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제1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 시 배출자,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을 구청장에게 서면(방문)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 (생 략)	제31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33조(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배출 방법 등) (생 략)	제33조(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배출 방법 등)
① ~ ② (생 략)	① (현행 제목외의 부분과 같음)
	② ~ ③ (현행 제2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제38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제38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p>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봉투를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가구원이 1명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② ----- 생활폐기물용 및 음식물쓰레기용 ----- -----.</p>																														
<p>별표 3 종량제봉투가격(제20조 제2항 관련) 2. 특수종량제 봉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용량</th> <th colspan="2">판매가격 (원)</th> </tr> <tr> <th>2015.10. 1. ~ 2016.12.31.</th> <th>2017. 1. 1. ~</th> </tr> </thead> <tbody> <tr> <td>20L</td> <td>1,840</td> <td>2,040</td> </tr> <tr> <td>50L</td> <td>4,590</td> <td>5,100</td> </tr> </tbody> </table>	용량	판매가격 (원)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20L	1,840	2,040	50L	4,590	5,100	<p>별표 3 종량제봉투가격(제20조 제2항 관련) 2. 특수종량제 봉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용량</th> <th colspan="2">판매가격 (원)</th> </tr> <tr> <th>2015.10. 1. ~ 2016.12.31.</th> <th>2017. 1. 1. ~</th> </tr> </thead> <tbody> <tr> <td>20L</td> <td>1,840</td> <td>2,040</td> </tr> <tr> <td>(삭제)</td> <td>(삭제)</td> <td>(삭제)</td> </tr> </tbody> </table>	용량	판매가격 (원)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20L	1,840	2,040	(삭제)	(삭제)	(삭제)								
용량		판매가격 (원)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20L	1,840	2,040																													
50L	4,590	5,100																													
용량	판매가격 (원)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20L	1,840	2,040																													
(삭제)	(삭제)	(삭제)																													
<p>[별표5]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연번</th> <th>종류</th> <th>규격</th> <th>수수료</th> <th>기존</th> </tr> </thead> <tbody> <tr> <td>98</td> <td>(생 략)</td> <td>(생 략)</td> <td>(생 략)</td> <td></td> </tr> <tr> <td><신설></td> <td><신 설></td> <td><신 설></td> <td><신 설></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종류	규격	수수료	기존	98	(생 략)	(생 략)	(생 략)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p>[별표5]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제32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연번</th> <th>종류</th> <th>규격</th> <th>수수료</th> <th>기존</th> </tr> </thead> <tbody> <tr> <td>98</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99</td> <td>태양광 폐패널</td> <td>20kg 당</td> <td>6,000</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종류	규격	수수료	기존	9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9	태양광 폐패널	20kg 당	6,000	
연번	종류	규격	수수료	기존																											
98	(생 략)	(생 략)	(생 략)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연번	종류	규격	수수료	기존																											
9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9	태양광 폐패널	20kg 당	6,000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서울시 등 상위기관의 개정 권고, 민원 의견 등을 수렴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수거대행업체 계약기간 2년→3년
- 공사업 생활폐기물 배출 시 배출자가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 신고 후 배출
- 생활폐기물용 봉투 이외 음식물종량제 봉투 지원
- 별표3 특수종량제 봉투 50리터 항목삭제
-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항목추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65호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를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관리 책임과 식별의 명확성을 위해 소형음식점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용기에 업소명을 표기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구분하여 업소명 및 처리업체명을 표기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및 나목의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4. ~ 7. (생략)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 ----- -----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4. ~ 7. (현행과 같음)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 ③ (생략)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구분하여 업소명 및 처리업체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단, 관리 책임과 식별의 명확성을 위해 소형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업소명을 표기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구분하여 업소명 및 처리업체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의 권고 조치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완화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범위 확대 (제2조제3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및 나목의 일반음식점 중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사업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외
- 소형음식점 전용수거용기에 업소명 표기 (제11조제4항)
 - 배출자의 관리의식 제고 및 행정지도에 활용 가능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66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구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 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
-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 2. 불법촬영 전담인력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 4.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 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설비 설치) 구청장은 신축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스크린, 안심벨 등의 예방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서울중부경찰서, 서울남대문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시점검 이후에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제2조).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사업에 대하여 규정(제5조).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상시 점검체계 구축 의무 규정(제6조).
- 특별관리 대상 지정 화장실에 관하여 규정(제8조).
- 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유도 실시사항 규정(제9조).
- 불법촬영 예방 교육·홍보에 관하여 규정(제14조~제15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67호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기물파손 등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원직 근로자
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 의무) ①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 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이 입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4.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전화 녹음시스템 설치
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4.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

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한

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지원 구분	근 거	지원 한도	세 부 기 준
심리 상담	제5조제1호	상담 치료·연계	
의료비	제5조제2호	1인당 연간 1,000만원 범위 내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제5조제3호	부서장 판단에 따라 자체 부여	
법률 상담	제5조제4호	상담 연계	
소송 지원	제5조제4호	예산의 범위 내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	제5조제6호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 안전요원 배치 및 홍보방안 강구	제6조제1항 및 제2항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발 생 일		부 서 명	
피해 공무원	○ 직급(위): ○ 성 명:	연 락 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 ○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		
지원 신청 내용	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은행명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중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등 책무 규정(제1조 ~ 제3조)
-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의무 규정(제4조).
- 피해예방 및 치유지원 사업 관련 사항 규정(제5조~제7조).
- 지원 방법,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제1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68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제목 “(보훈예우수당 및 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범위 안”을 “범위”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위문금 또는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10조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훈예우수당
2. 생활안정수당
3. 유공자 사망위로금
4. 위문금(보훈의 달, 설, 추석)

제11조 제1항 “수당 및 위문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중구에 계속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같은 조의 제2항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증구에 계속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사망자로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사망자로 하며,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 중 “여건조성”을 “여건 조성”으로 한다.

제19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조례 제854호(2009. 5. 20.), 제887호(2010. 6. 23.)의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보훈대상유형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
	주소 연락처		
지급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신청 수 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확인)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신청함.
	<input type="checkbox"/> 보훈예우수당		
	<input type="checkbox"/> 생활안정수당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거주기간 확인)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1. 주민등록초본 1부 (중구 전입일자 :) ※ 담당공무원의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직접 제출
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삭제·이용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훈예우수당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원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항목 일체 (성명, 보훈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 범위-----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10조(보훈예우수당 및 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위문금 또는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예우수당 : 월 7만원 2. 유공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 3. 보훈의 달에 50,000원 지급 4. 설, 추석에 50,000원씩 지급 1. ~ 4. (생 략)	제10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예우수당 2. 생활안정수당 3. 유공자 사망위로금 4. 위문금(보훈의 달, 설, 추석)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① 수당 및 위문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중구에 계속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제11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① ---- 등 지급대상자는 제3조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 자에게는 -----

현 행	개 정 안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중구에 계속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사망자로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지급한다.
<신 설> 제14조(수당지급의 중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생 략)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③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사망자로 하며,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지급의 중지) -----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제17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의 참여조성) ----- ----- 여건 조성-----.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 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p> <p>[별지 제1호서식]</p> <table border="1"> <tr> <td colspan="2">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td> <td>처리기간</td> </tr> <tr> <td colspan="2"></td> <td>30일</td> </tr> <tr> <td rowspan="4">신청인</td> <td>성 명</td> <td>지급대상유형</td> </tr> <tr> <td>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주 소</td> <td></td> </tr> <tr> <td>연 락 처</td> <td></td> </tr> <tr> <td colspan="2">예금계좌</td> <td>예금주명</td> <td>계좌번호</td> </tr> <tr> <td colspan="4"> <p>「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 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td> </tr> <tr> <td colspan="4"> <p>중구청장 귀하</p> <table border="1"> <tr> <td>담당공무원</td> <td>주민등록본, 유증자확인원</td> <td>수수료</td> </tr> <tr> <td>구비서류</td> <td>개인사망 개정안 계열서류</td> <td></td> </tr> <tr> <td colspan="3"> <p>행정정보 중동여용 동의서</p> </td> </tr> </table> <p>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이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td> </tr> </table>		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지급대상유형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예금계좌		예금주명	계좌번호	<p>「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 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중구청장 귀하</p> <table border="1"> <tr> <td>담당공무원</td> <td>주민등록본, 유증자확인원</td> <td>수수료</td> </tr> <tr> <td>구비서류</td> <td>개인사망 개정안 계열서류</td> <td></td> </tr> <tr> <td colspan="3"> <p>행정정보 중동여용 동의서</p> </td> </tr> </table> <p>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이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담당공무원	주민등록본, 유증자확인원	수수료	구비서류	개인사망 개정안 계열서류		<p>행정정보 중동여용 동의서</p>		
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지급대상유형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예금계좌		예금주명	계좌번호																																		
<p>「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 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중구청장 귀하</p> <table border="1"> <tr> <td>담당공무원</td> <td>주민등록본, 유증자확인원</td> <td>수수료</td> </tr> <tr> <td>구비서류</td> <td>개인사망 개정안 계열서류</td> <td></td> </tr> <tr> <td colspan="3"> <p>행정정보 중동여용 동의서</p> </td> </tr> </table> <p>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이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담당공무원	주민등록본, 유증자확인원	수수료	구비서류	개인사망 개정안 계열서류		<p>행정정보 중동여용 동의서</p>																											
담당공무원	주민등록본, 유증자확인원	수수료																																			
구비서류	개인사망 개정안 계열서류																																				
<p>행정정보 중동여용 동의서</p>																																					

부 칙<조례 제854호, 2009. 5. 20.>

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10 조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 칙<조례 제887호, 2010. 6. 23.>

제2조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후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 예우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 | | | |--|--|--|--|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 | 처리기간 | | | | | 30일 | | | 신청인 | 성 명 | 보훈대상유형 | | | | 주민등록번호 | 보훈번호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 지급 | 예금주명 | 계좌번호 | | | 신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급권자 또는 유증자를 포함 확인) |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수당으로 신청함. | | | 수당 | <p>「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 | | | 구비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중동여용동의서 포함 확인) | | | 서류 | 1. 국가유공자(유족)증 자료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1. 주민등록초본 1부 (중구 전입일자:)
※ 담당공무원 확인에 불응하여 없는 경우 신청일 직전 제출 | | | <p>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p> <p>※ 신청인은 정보보호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삭제·이용정지 등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훈예우수당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원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장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발송 일체
(성명, 보훈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원 기간</p> <p>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 | | | | <p>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 | | | 부 칙<조례 제854호, 2009. 5. 20.> <삭 제> 부 칙<조례 제887호, 2010. 6. 23.> <삭 제>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보훈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정비하여 보훈대상자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 수당 지급대상자 기본 변경 (제10조)
- 보훈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규정 삭제(제11조제1항)
- 생활안정수당 신설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제10조, 제11조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69호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8. (생략)</p> <p><신설></p> <p>10. (생략)</p>	<p>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저소득주민에 대한 이사비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제3조제9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70호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기후위기 대응”이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

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청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중장기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한다.

② 구청장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구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구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 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제9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제8조의 구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분기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장 서울특별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녹색성장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

2.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

제18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사업자 및 국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저공해 자동차 구매보급 및 도심의 자동

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녹색생활의 확산 및 이행) ① 구민은 녹색생활 확산 및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승용·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② 구청장은 구민들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활성화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제1조~제6조).
-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제7조~제11조).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제12조~제17조).
-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하여 규정(제18조~제2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71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7조의2제1항”을 “영 제10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를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4조제1항 중 “토지위에”를 “토지 위에”로,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허가대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18조의3 본문 중 “영 제13조제4항에”를 “영 제13조제5항에”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을 “사용허가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수익허가의”를 “사용허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본문 중 “사용·수익 허가부를”을 “사용허가부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을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으로 하며, “사용·수익허가의”를 “사용허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을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으로 하며, “사용·수익허가 받은”을 “사용허가 받은”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에 대한”을 “사용허가에 대한”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부계약을 해지하고”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고”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로 하며,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24조제3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3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

11호 중 “같은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영 제35조에”를 “영 제19조제1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4조제2항에”를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제75조에서 규정한보증금의 예를”을 “제61조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10조에”를 “제129조에”로 한다.

제35조제2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으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3월에부과”를 “3월에 부과”로 한다.

제88조의2 본문 중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를 “법 제81조제1항 및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무단점유자가”로 하고, “무단점유를 한 자의”를 “무단점유자의”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은닉재산중”을 “은닉재산 중”으로 한다.

제90조 본문 중 “구유재산중”을 “구유재산 중”으로 하고, “임야가있는”을 “임야가 있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분의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 -----
제3조(구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제친화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구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중구청 소속 공무원과 과반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영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 운영·기능 및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

현 행	개 정 안
다만, 재산취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 ----- ----- -----.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신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법 제10조의2 ----- -----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

현 행	개 정 안
	<u>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u>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그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 및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로 하며, 그 부지의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토지 위에 ----- ----- 무상사용 허가대상 ----- ----- ----- ----- ----- ----- -----.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략)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u>사용·수익허가</u>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 2. (생략)</p>	<p>② ----- ----- <u>사용허가</u>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8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u>사용·수익허가</u>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1. ~ 4.(생략)</p> <p>5. <u>사용·수익허가</u> 재산의 보존의무</p> <p>6. <u>사용·수익허가</u>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p> <p>7. (생략)</p>	<p>제18조(사용허가) ----- <u>사용허가</u>----- ----- <u>각 호의</u>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사용허가</u> -----</p> <p>6. <u>사용허가</u> -----</p> <p>7.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3(행정재산의 지명경쟁 대상)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u>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u> 경우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u>사용·수익허가</u>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p> <p>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u>사용·수익허가</u>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제18조의3(행정재산의 지명경쟁 대상) 영 제13조제5항에 ----- ----- <u>사용허가할 수 있는</u>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사용허가의</u> -----</p> <p>3. -----</p> <p>----- <u>사용허가를 받을 자를</u> -----</p> <p>-----</p>

현행	개정안
<p>제19조(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u>사용·수익허가부</u>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19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 <u>사용허가부</u> ----- -----.</p>
<p>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u>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u>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u>사용·수익허가</u>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 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u>행정재산을 위탁받은</u> 수탁자가 <u>사용·수익허가</u>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u>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u> ----- ----- <u>사용허가의</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u> ----- ----- <u>사용허가</u> 받은 -----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u>사용·수익허가에 대한</u>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 <u>사용허가에 대한</u> ----- ----- --.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u>대부계약을 해지하고</u>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 ----- <u>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고</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u>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u> (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 <u>외국인투자촉진법</u> 」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u>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u> ----- ----- 「 <u>외국인투자촉진법</u> 」 ----- ----- -----.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 -----

현 행	개 정 안
1. ~ 2. (생 략) 3. 「 <u>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 」 제2조에 따른 <u>아파트형 공장</u> 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구유재산 4. 「 <u>외국인투자촉진법</u> 」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구유재산 5. ~ 6.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3. 「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 」 ----- <u>지식산업센터</u> 로 ----- 4. 「 <u>외국인투자 촉진법</u> 」 ----- ----- -- 5. ~ 6.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2. (생 략) 3. 「 <u>외국인투자촉진법</u> 」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생 략) 5. 「 <u>중소기업기본법</u> 」 또는 「 <u>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u> 」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6. ~ 10. (생 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외국인투자 촉진법</u> 」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u>외국인투자기업 등이</u> ----- ----- 4. (현행과 같음) 5. ----- 「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u> 」 ----- ----- ----- 6. ~ 10.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p> <p>12. (생략)</p> <p>⑥ ~ ⑦ (생략)</p>	<p>11. -----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p>제28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②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p> <p>③ (생략)</p>	<p>제28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 ----- 영 제19조제13항에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 ----- 사 용허가 ----- ----- -----</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나목·다목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p>	<p>④ -----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⑤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 ----- ----- ----- -----</p>
<p>⑥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법 제31조제4</p>	<p>⑥ ----- 사용허가 ----- ----- ----- ----- ----- ----- -----</p>

현 행	개 정 안
<p>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 한다)와 인건비,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가격으로 한다.</p> <p>1. (생 략)</p> <p>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u>재산</u></p> <p>3. ~ 4. (생 략)</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u>재산</u></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87조(변상금의 부과)</p> <p>① ~ ② (생 략)</p> <p>③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 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p> <p>제88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구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단점유를 한 자의 신청을 받거나 또는 구청장의 직권으로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p> <p>1. ~ 4. (생 략)</p>	<p>제87조(변상금의 부과)</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3월에 부과. -----</p> <p>-----</p> <p>-----</p> <p>제88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p> <p>법 제81조제1항 및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무단점유자가 -----</p> <p>----- 무단점유자의 -----</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89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 략)</p> <p>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u>구유재산</u>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다.</p> <p>③ ~ ④ (생 략)</p> <p>제90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u>구유재산</u>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u>임야</u>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89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은닉재산 중 -----</p> <p>-----</p> <p>-----</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90조(합필의 신청) -----</p> <p>---- <u>구유재산</u> 중 -----</p> <p>----- 임야가 있는 -----</p> <p>-----</p> <p>-----</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요재산’의 범위를 지정하고 및 공유재산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주민 공개 규정 (제5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범위 규정 (제10조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72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구세 감면 관련 사항”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를 “구세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로 한다.

별지 서식 전부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접사용의 의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면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p> <p>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150원</u></p> <p>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500원</u></p> <p>② (생 략)</p>	<p>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1 ----- ----- ----- <u>800원</u> 2.----- ----- ----- <u>1,600원</u>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 ----- ----- 건축물 및 주택-----.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u>감면여부를 조사·결정</u> 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u>신청인에게 통지</u> 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구세 감면 관련 사항</u> ----- ----- --- <u>구세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u>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감면 규정 신설에 따른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재산세 감면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면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의료 기관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4조의2)
- 자동차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제10조)
- 직접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과 주택으로 변경(제11조)
- ‘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지’ 문구 변경(제1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73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 제1항 및 제46조 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에 적용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술직군	시설 관리	기계시설					지방 시설관 리사무 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 시설관리 서기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전기시설									

[별표 2]

신설하는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표(제4조 관련)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설관리	
			직류	기계시설	전기시설
6 급 및 7 급	공개경쟁 임용	제1차	필수	국어, 한국사, 사회	국어, 한국사, 사회
		제2차	필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7 급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을 통한 임용· 전직·승진	제1차	필수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8 급 및 9 급	공개경쟁 임용	제1차	필수	국어, 한국사	국어, 한국사
		제2차	필수	기계일반	전기이론
9 급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을 통한 임용· 전직·승진	제1차	필수	한국사	한국사
		제2차	필수	기계일반	전기이론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직렬 내 세부 직류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류 신설에 따른 관련 내용 규정 (제3조)
 -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내 “기계시설”, “전기시설” 직류 신설
- 신설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 규정 (제4조)
 - 6급, 7급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 8급, 9급 : 기계일반, 전기이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74호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각종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각종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방법)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자료 제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안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

제6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시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제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각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제1조, 제2조).
- 해당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제3조).
- 업무제휴 및 협약 내용의 구의회 보고에 대하여 규정(제4조).
-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75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

④ 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 4.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검토한 후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를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의 확정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을 대상으

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 2.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 3.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3. 제7조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 및 검토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 4. 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5.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6. 제20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7. 제22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8. 구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각 국·소장으로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경제·환경·보건복지·교육·도시재생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 2.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제11조제4항의 당연직 위원 및 제11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2.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일부 안건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한다.
- ③ 위원이 심의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운영위원회 및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협력지원)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내외 도시와 기업, 시민사회단체, 학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표 개발 등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홍보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인증·표창)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구민·사업자·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개인·사업자·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등 규정 (제4조 ~ 제6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규정(제8조, 제9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하여 규정 (제10조 ~ 제19조)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하여 규정(제20조 ~ 제22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76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장(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

제22조(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

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의견제출을 처리해야 한다.

제23조(의견제출 제외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24조(의견제출서 작성방법) ①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2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 ①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검토를 생략한 경우 그 사유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 2. 의견제출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의견제출이 제23조 각 호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외 사유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7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입법절차를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제2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비밀 준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	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 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제출일자	
제출의견	현행 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명	
관계법령		
소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검토일자
	담당자	
	연락처	

검토내용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	--------------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의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連署)주민의 수를 정하여 입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 ----- -----.
제2조(정의) 1. ~ 6. (생략) 7. <신 설>	제2조(정의) 1. ~ 6. (현행과 같음) 7.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입법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신 설></p>	<p>제7장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p> <p>제22조(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주민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의견제출을 처리해야 한다.</p>
<p><신 설></p>	<p>제23조(의견제출 제외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p> <p>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p> <p>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p>
<p><신 설></p>	<p>제24조(의견제출서 작성방법) ①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p>

현 행	개 정 안
	<p>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p> <p>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p>
<p><신 설></p>	<p>제2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p>
<p><신 설></p>	<p>제26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 ①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해당 규칙 소관</p>

현 행	개 정 안
	<p>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한다.</p> <p>② 구청장은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검토를 생략한 경우 그 사유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p> <p>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p> <p>2. 의견제출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p> <p>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의견제출이 제23조 각 호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외 사유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⑤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입법절차를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신 설>	제2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칙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규정 (제22조, 제24조)
-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제외 대상 규정 (제23조)
-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절차 규정 (제26조)
- 관련 서식 마련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77호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공보실과”를 “홍보업무 담당부서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p> <p>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받은 사람</u></p> <p>2. <u>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p> <p>3. <u>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u></p>	<p><삭 제></p>
<p>제6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u>공보실</u>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u>공보실과</u> 협의하여 진행한다.</p>	<p>제6조(운영) ----- -- <u>홍보업무 담당부서</u>-----, ----- ----- <u>홍보업무 담당부서</u>와 ----- -----.</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급기관 개정 권고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홍보대사 위촉 결격사유 조항 정비(제5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78호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중구와 주민,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통 매체”란 서울특별시 중구가 제공하는 정보를 주민이 받고 이에 대해 주민의 의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일체의 온·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서울특별시 중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와 플랫폼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영상·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주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2장 홍보자문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구정 홍보 및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방안
2.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주민소통 방안
3. 그 밖에 홍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전체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추천을 받은 구의원 1명
2. 전·현직 언론인
3. 언론, 사진, 영상 등을 전공하는 대학교수
4. 홍보, 미디어, 편집디자인, 광고 등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회적 물의,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그 밖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

-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홍보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부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2. 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제3장 소셜미디어

- 제10조(소셜미디어 계정 개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 참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내용
 2. 교육, 문화, 복지, 예술, 건강 등 생활정보
 3. 구민 생활에 유용한 소식 및 프로그램 등 공공 행정정보
 4.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내용
 5. 구민의견, 미답사례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6. 그 밖에 구와 관련된 사항 등
- 제11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최신의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고 해당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12조(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주관부서는 미디어 홍보관련 부서로 한다.
-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구민 참여 지원

- 제13조(행사의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이벤트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온·오프라인 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2. 구가 주최하는 각종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소셜미디어 등의 홍보매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구정 홍보 콘텐츠 개발 및 구민 참여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구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의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이나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의 종류 및 액수 등 그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소통 매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지한다.

제14조(실비 보상 등) ① 홍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대한 기념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콘텐츠 제작 참여자 선정에 있어 중구민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5조(전문가 활용 및 보상) ①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가가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구청장은 구를 홍보하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주민,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는「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각 매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정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소통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제명)
 -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소통 및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 홍보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 (제4조 ~ 제9조)
- 구정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 명시 (제1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79호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③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후면에 부착하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1위로 고령운전자 수는 해마다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여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바,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및 안전교육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 고령운전자 대상의 교통안전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 고령운전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80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비고 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제1항 관련)</p> <p><비 고> 1. ~ 22. (생략)</p> <p><신 설></p>	<p>【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제1항 관련)</p> <p><비 고> 1. ~ 22. (현행과 같음)</p> <p>23.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 1항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 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주소 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병역의 의무가 존중 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 근거 규정 신설(별표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81호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 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제3조제3항의 “제2항의제8호”를 “제2항의 제9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p> <p>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7. (생 략)</p> <p><신 설></p> <p>8.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사업</p> <p>③ 제2항의제8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p>	<p>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7.(현행과 같음)</p> <p>8.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③ 제2항제9호----- ----- ----- ----- -----.</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병역의 의무가 존중 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근거 규정 신설(제3조제2항제8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82호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조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를 말한다.
3. “대리신청인”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1. 산모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② 그 외,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기준)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정액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6조(지원 안내)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절차) ① 동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산모의 관내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의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을, 관할 동장은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산후조리비용지원금 신청 대장)는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신 청 인	산 모	생 년 월 일	-
	대리신청인	생 년 월 일	-
신 생 아	성 명	생 년 월 일	-
주 소			
전 화 번 호	자 택	H. P.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부정수급자 환수조치 안내	※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지원받은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		
	환수 조치 확인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환수 등 사후조치에 대한 사전동의 서명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중구청장 귀하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첨부서류 : 신청인(산모) 예금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인의 경우 위임장 1부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 확인]			
신청인·대리신청인 (산모와의 관계)	행 정 동 명	거 주 기 간	신생아 출생등록일
담당 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사업운영 자체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대상자 자격판정 자료 (신청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금융정보, 가구정보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련 본인 확인에 관한 업무
○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련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업무
○ 허위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관리 업무
○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통계 자료 생산 등 업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전자이용권 이용 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 위 내용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본 기관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업무
- 산후조리비용 지원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별지 제2호 서식]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Table with 3 main columns: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Includes fields for applicant (신청인), applicant's spouse (출산자), and applicant's parent (출생자).

Table with 5 columns: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Lists family members including self, spouse, and children.

Main application form table with multiple rows for services like 출산양육지원금, 산후조리비용, 다둥이행복카드발급, 모유수유 클리닉, 유축기 무료 대여, 하수도 사용료 경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and 우리동네 보육반장.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 (제1조, 제2조)
-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규정 (제4조, 제5조)
 - 지원대상 : 출산일 6개월 전 부터 중구에 거주중인 산모
 - 지원금액 : 정액 100만원
- 지원 신청 절차 규정 (제7조, 제8조)
- 환수조치 및 신청대장 관리 절차 규정 (제9조, 제1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83호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3조 중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4조제3항 중 “재위탁 할 수 있다”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u> ----- -----.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8. <신설> 9. <신설> 10. (생략)	제3조(업무) ----- -----. 1.~ 6. (현행과 같음)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0. (현행 제7호와 같음)
제4조(운영의 위탁) ① ~ ② (생략)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재위탁 또는 재계약</u>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치매관리법」,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 ----- ----- ----- ----- ----- <u>「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내용을 현행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업무 규정 (제3조제7호 ~ 제9호)
- 민간위탁 관련 용어 세분화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제4조제3항)
- 인용 조문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제1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84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중구민"이라 한다)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이하 "야간·휴일 진료의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야간"이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비가산제가 적용 가능한 평일 18시~다음날 9시 사이의 시간대를 말한다.
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4. "보건의료서비스"란 야간·휴일 진료원에서 행해지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을 지정하고 중구민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중구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야간·휴일 진료의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시간을 정한다.

1. 평일: 19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2. 토요일: 15시부터 당일 21시까지
3. 휴일: 9시부터 당일 21시까지
- ③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간·휴일 진료의원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금액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5조(관리)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 진료의원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야간·휴일 진료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야간·휴일 진료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휴일 진료의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기관의 의무) 공공 야간·휴일 진료의원의 장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 야간·휴일 진료의원 운영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중구 공공 야간·휴일 진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공공 야간·휴일 진료의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공공 야간·휴일 진료의원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비용 등 관련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2. 중구보건소 의약과장(의무업무 부서)의 장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의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근무의사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의 장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공무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낮 시간에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구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1조, 제2조)
- 건강지킴이 진료의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 (제4조)
 - 지정대상 : 중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 운영시간 : 평일(19시 ~ 익일 1시) / 토요일(15시 ~ 21시) / 휴일(9시 ~ 21시)
 - 지원내용 : 평일 및 토요일(시간당 10만원) / 휴일(시간당 15만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85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일·속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범위) 당직수당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일·속직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지급액)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속직 근무자별로 당직 시마다 8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 제4조(지급방법) 당직수당은 일·속직 근무 후 당직일지를 작성한 근무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월별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례에 의하여 지급 중인 수당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중구의회 당직 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에 관한 내용을 규정

2. 주요내용

- 당직수당의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 당직수당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당직수당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86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의회 인사위원회”, 제5호를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설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중 “전서체로”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모양으로”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표2에 의하여 인영을 등록대장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에 붙여야 한다.

제6조 중 “의정업무담당주사”를 “의정담당 팀장”으로 변경한다.

별표는 “별표1 공인의 규격”과 “별표2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변경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 중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은 구분에 공고된 것으로 본다.

【별표1】 공인의 규격

공인의 규격

구 분		한변의 길이(cm)
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인	3.6
직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의 인	2.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상임위원장의 인	2.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장의 인	2.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인	2.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2.1

【별표2】 전자이미지공인대장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 사유				
		관리부서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초 사용일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비고				
		폐기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폐기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종 사용일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인의 종류)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조(공인의 종류) ② ----- ----- 1.~3. (현행과 같음) 4. <u>의회 인사위원회</u> 5. <u>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u>
제2조(공인의 종류) ① ~ ④ (생 략) <신 설>	제2조(공인의 종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 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 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u>
제3조(인영의 내용)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u>전서체로</u> 하여 가로로 새긴다. <신 설>	제3조(인영의 내용) ② ----- ----- <u>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모양으로</u> ----- 제5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전자 이미지 공인은 <u>별표2에 의하여 인영을 등록대장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에 붙여야 한다.</u>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리) 공인은 <u>의정업무담당주사가</u>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 공인의 규격	제6조(관리) ----- <u>의정담당 팀장이</u> ----- ----- 【별표1】 공인의 규격 공인의 규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한변의 길이(cm)</th> </tr> </thead> <tbody> <tr> <td>청인</td> <td>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인</td> <td>3.6</td> </tr> <tr> <td rowspan="3">직인</td> <td>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의 인</td> <td>2.4</td> </tr> <tr> <td>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상임위원장의 인</td> <td><u>1.8</u></td> </tr> <tr> <td>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장의 인</td> <td><u>1.8</u></td> </tr> <tr> <td></td> <td><신 설></td> <td></td> </tr> <tr> <td></td> <td><신 설></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한변의 길이(cm)	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인	3.6	직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의 인	2.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상임위원장의 인	<u>1.8</u>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장의 인	<u>1.8</u>		<신 설>			<신 설>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한변의 길이(cm)</th> </tr> </thead> <tbody> <tr> <td>청인</td> <td>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인</td> <td>3.6</td> </tr> <tr> <td rowspan="5">직인</td> <td>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의 인</td> <td>2.4</td> </tr> <tr> <td>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상임위원장의 인</td> <td><u>2.1</u></td> </tr> <tr> <td>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장의 인</td> <td><u>2.1</u></td> </tr> <tr> <td><u>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인</u></td> <td><u>2.1</u></td> </tr> <tr> <td><u>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인</u></td> <td><u>2.1</u></td> </tr> </tbody> </table>	구 분		한변의 길이(cm)	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인	3.6	직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의 인	2.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상임위원장의 인	<u>2.1</u>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장의 인	<u>2.1</u>	<u>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인</u>	<u>2.1</u>	<u>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인</u>	<u>2.1</u>
구 분		한변의 길이(cm)																																			
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인	3.6																																			
직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의 인	2.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상임위원장의 인	<u>1.8</u>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장의 인	<u>1.8</u>																																			
	<신 설>																																				
	<신 설>																																				
구 분		한변의 길이(cm)																																			
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인	3.6																																			
직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의 인	2.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상임위원장의 인	<u>2.1</u>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장의 인	<u>2.1</u>																																			
	<u>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인</u>	<u>2.1</u>																																			
	<u>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인</u>	<u>2.1</u>																																			
<신 설>	【별표2】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별지 참조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공인의 서체를 훈민정음체로 변경하여 구민 친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 직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규정 신설(제2조)
- 공인의 인영을 훈민정음체로 서체 변경(제3조)
-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방법 신설(제5조의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87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019년 월 3,012,940원”을 “2023년 월 3,225,970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2024년부터 2026년까지”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의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비고

-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동일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거리 12 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철도운임	선반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장 부의장	·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실비 (1 등석)	실비액	가등급 35	가등급 223	가등급 107	140	170	195
					나등급 35	나등급 160	나등급 78			
의원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급 또는 침대요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실비 (2 등석)	실비액	다등급 35	다등급 130	다등급 58	130	155	180
					라등급 35	라등급 85	라등급 49			
					가등급 30	가등급 176	가등급 81			
					나등급 30	나등급 137	나등급 59			
					다등급 30	다등급 106	다등급 44			
					라등급 30	라등급 81	라등급 37			

비고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관련 [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월정수당은 2019년 월 3,012,94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	2023년 월 3,225,970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1항 관련)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1항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철도 운임</th> <th>선박 운임</th> <th>항공 운임</th> <th>자동차 운임</th> <th>현지교 통비 (1일당)</th> <th>숙박비 (1일당)</th> <th>식비 (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의장 부의장 의원</td> <td>1등급</td> <td>2등 정액</td> <td>정액</td> <td>정액</td> <td>20,000</td> <td>46,000</td> <td>25,000</td> </tr> </tbody> </table>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 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철도 운임</th> <th>선박 운임</th> <th>항공 운임</th> <th>자동차 운임</th> <th>현지교 통비 (1일당)</th> <th>숙박비 (1일당)</th> <th>식비 (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의장 부의장 의원</td> <td>실비 (특실)</td> <td>실비 (1등급)</td> <td>실비</td> <td>실비</td> <td>20,000</td> <td>실비</td> <td>25,000</td> </tr> </tbody> </table>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 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의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 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 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의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참조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참조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10.27.)를 관련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구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확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의 월정수당 금액 개정(제3조)
 - 2023년 : 월 3,225,970원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
-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개정(별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88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중구청 또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중구청 또는 중구청의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중구청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중구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중구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8조제3항제1호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를 “의장이”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를 “의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월 3회를 초과하여”를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5조 및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8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 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직무관련자”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p> <p>가. ~ 나. (생략)</p> <p><신 설></p> <p>2. (생략)</p> <p>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 ----- ----- ----- -----.</p> <p>가. ~ 나.</p> <p>다. <u>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u></p> <p>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p> <p>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p> <p>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p> <p>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p> <p>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p> <p>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p> <p>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p> <p>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p> <p>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p>	

현 행	개 정 안
<p>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p> <p>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p> <p>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본회의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전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p>	
<p>제5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p>	
<p>제6조(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p> <p>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p> <p>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제7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중구청 및 중구청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p> <p>제8조(수익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중구청 및 중구청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익계약(이하 “수익계</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중구청 및 중구청의 산하기관과 수익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생략)</p> <p><신 설></p> <p>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17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제17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 ----- ----- -----.</p>

현행	개정안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 ----- 전가(轉嫁)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중구청 또는 중구청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 -----
제1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② (생략)	제1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 ----- -----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1. ----- ----- 의장이 ----- ----- -----

현행	개정안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 ----- 의장이 ----- -----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⑦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검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제23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p> <p>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p> <p>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p>	<p>⑧ -----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 ----- . <단서 삭제></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구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 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p> <p>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관련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명절에 제공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제공가액을 조정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중복 규정 삭제(제4조~제8조, 제15조, 제23조).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제공가액 범위 상향 조정 (별표 1).
 - 명절에만 '10만원' → '20만원'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64호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p> <p>1. (생략)</p> <p>2. <u>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u></p> <p>3. ~ 7. (생략)</p>	<p>제7조(자격기준)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삭제)</p> <p>3. ~ 7. (현행과 같음)</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개정 권고 및 주민의 직업선택 권리 침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미화원 채용 자격기준 응시 제한 항목 중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내용을 삭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935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 구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 예방적 갈등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목적, 정의, 구청장 책무 등(안 제1조~제5조)
- 갈등영향분석(안 제6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안 제7조~제9조)
- 심의결과의 반영,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안 제10조~제11조)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합의결과문 이행 등(안 제12조~제14조)
-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활용, 마을갈등조정지원단, 비밀유지(안 제15조~제17조)
-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안 제18조~제19조)
- 수당지급 등(안 제20조~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02-3396-

4433, 팩스 : 02-3396-9019, email : ahjunggi@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설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갈등의 예방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 4.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 5.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6. 제19조에 따른 갈등관리실태의 평가·활용·조치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기획재정 업무 소관 국장 등 2명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
- 2. 시민단체 대표
- 3.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 4. 건축·복지환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
- 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⑨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절명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해당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전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갈등의 조정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 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관련이 없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활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 3.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마을갈등조정지원단) ① 구청장은 갈등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 내 갈등 조정을 위한 상담·의견청취, 사례조사 및 중재 활동
- 2. 그 밖에 공동체 회복과 갈등 예방·해결에 관련한 활동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협의회 위원, 지원단 단원, 제15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제18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제19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갈등 업무추진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수당지급 등)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5조에 따른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제16조에 의한 지원단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와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937호

전통시장 인정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 제16조에 따라 「서울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12. 31. ~ 2023. 1. 14.

2. **공고내용** : 전통시장 인정

일련번호	시장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규모(㎡, 개)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제2022-7호	아트프라자	이석봉	서울 중구 신당동 213-67 (마장로1길 28)	2,061㎡	6,828.13㎡ (지하3층~ 지상3층)	4,231.74㎡	315개